

-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審 査 報 告 書

2006. 6. 19.
제250회 임시회

1. 심사 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6년 6월 5일

○ 회부일자 : 2006년 6월 5일

다. 상정일자 :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6. 6. 14 :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곽 연 창)

가. 제안 이유

○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소액 지방세 세무공무원 수납관련 조문 변경, 공동시설세 납기변경, 지역개발세 납세의무자 및 세율정비 등 관련조문을 지방세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시행규칙에서 규정되었던 소액 지방세 수납관련 조문이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 정비(안 제11조)

- 취득세 과세대상에 승마회원권 추가(안 제19조 및 안 제24조)
- 공동시설세 납기를 변경(안 제60조)
 -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일괄징수 근거규정 마련
 - 변경전 : 7. 16일 ~ 7. 31일, 9. 16일 ~9. 30일
 - 변경후 : 7. 16일 ~ 7. 31일
-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납세의무자 및 세율규정 정비 (안 제74조 및 안 제75조)
 - 납세의무자변경
 - 변경전 :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
 - 변경후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 세 율 : 1,000분의 2 → 1,000분의 5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전문위원 연기봉)

- 본 개정조례안은
 - 승마회원권의 취득세 과세대상을 추가하고, 주택 재산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현행 7월과 9월 납기인 공동시설세 납기를 7월 납부로 간소화하는 한편,
 -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납세의무자 및 세율을 현행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 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조례개정은 바람직하고 타당하다고 여겨짐.
- 참고적으로 조례개정 사항이 도세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해서는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호”를 “「지방세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12조중 “지방세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한다

제19조중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에 승마회원권을 추가하여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2호중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과”를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으로 하고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과”를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으로 한다.

제43조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74조중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를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로 한다.

제75조중 “1,000분의 2”를 “1,000분의 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0천원 이하인 도세를 말한다.</p> <p>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이 규정한 기한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⑤(생략)</p> <p>제19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 ④(생략)</p> <p>제24조(신고 및 납부 등) ①(생략) 1. ~ 11. (생략) 12. <u>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과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있어서는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과 종합체육시설의 명칭·소재지 소유자·이용기간 및 연간이용일수</u> 13. ~ 14. (생략)</p>	<p>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지방세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9조제2항제2호----- ----- ----- -----</p> <p>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 영 ----- ----- ----- ----- ----- ----- ----- ----- ② ~ ⑤(현행과 같음)</p> <p>제19조(납세의무자 등) ①----- ----- <u>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u>----- ----- ----- ② ~ ④(현행과 같음)</p> <p>제24조(신고 및 납부 등) ①(현행과 같음) 1. ~ 11. (현행과 같음) 12. <u>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u>----- <u>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u>----- 및----- ----- 13. ~ 14.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p>제43조(특허권등록 등의 세율)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p>1. ~ 2.(생략)</p> <p>제60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 ~ ②(생략) 1. (생략) 2. 주택의 건축물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설></p> <p>제74조(납세의무자) <u>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u>는 지역개발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p>제75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지하 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채광된 광물가액의 <u>1,000분의 2</u>로 한다.</p>	<p>제43조(특허권등록 등의 세율) -- ----- 디자인----- ----- -----.</p> <p>1. ~ 2.(현행과 같음)</p> <p>제60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 ~ ②(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p> <p><u>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u></p> <p>제74조(납세의무자) <u>지하지원을 채광하는 자</u>----- ----- -----.</p> <p>제75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 ----- -----1,000분의 5-----.</p>

【관 계 법 령】

□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개정 1963.12.14, 1966.8.3, 1973.3.12, 1984.12.24,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1999.12.28, 2005.12.31>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6.12.31,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7.8.30, 2005.12.31>

제145조 (특허권 등록 등의 세율)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1991.12.14, 2005.12.31>

1. 상속에 의한 특허권등의 이전 : 매 1건당 6,000원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 매 1건당 9,000원
- [본조신설 1976.12.31]

제253조 (과세대상)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

자원보호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양수발전 용수를 제외한다)·지하수(온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지하자원·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개정 1994.12.22>[본조신설 1991.12.14]

제254조 (납세의무자)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전용수 : 유수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을 제외한다)을 하는 자
2. 지하수 : 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수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3.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개정 2005.12.31>
4.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
5. 원자력발전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제257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지역개발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12.22, 1999.12.28>

1.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 가.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1세제곱미터당 200원
 -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1세제곱미터당 100원
 -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외의 물 : 1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5
4. 컨테이너 : 컨테이너 1티이유(TEU)당 15,000원

②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 (납부 및 수납방법)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으로 이를 납부하되, 그 납세고지서·신고납부서 또는 독촉장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5>

②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다. <개정 1998.7.16, 2005.12.31>

1.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개정 2005.12.31>

제86조 (신고 및 납부) ①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5>

②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12.30>